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부지)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한국식품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지역조직인 경북본부의 구미시 설립에 따라 사업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식품연구원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상 사용허가 개요

- 위 치 :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교리 1376번지
- 대 상 : 토지 6,596.4m²
- 사용주체 :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 감면기간 : 2024. 11. . ~ 2044. 11. .(허가일로부터 20년)
- 사용면적 : 토지 6,596.4m²
- 면제사용료 : 757,266,600원 [37,863,330원 × 20년]

구 분	연간 사용료 산출내역	연 사용료
대 부 료	229,600원 × 6,596.4m ² × 2.5%	37,863,330원

나. 무상사용 필요성

-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구미시에 설립됨에 따라 구미시가 경북 지역 식품연구의 중추도시로 발돋움함으로써, 식품 관련 전후방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및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 한국식품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상사용 대상이 되며,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의 원활한 설립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의 지원이 필요

다. 사업내용

(1)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 조직형태 : 정부출연연구기관
- 사업비 : 206.3억원 (국 118.8, 도 32.81, 시 32.81, 연구원 21.88)
- 위치 : 구미시 선산읍 교리 1376
- 규모 : 부지 6,596.4m², 건축 5,000m²
- 조직 : 4개단 34명[연구직 28명, 행정직 6명]
- 주요사업 : 경북 특산물 활용 신소재산업화 연구, 제품 상용화 기술 개발, 지역 식품기업 지원

(2)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12. 12월 한국식품연구원 분원 유치 신청(경상북도)
- '13. 4. 9. 구미시-한국식품연구원 업무협약
- '15. 5. 21. 경상북도-한국식품연구원 업무협약
- '15. 5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경북본부 설립 계획 승인
- '16. 6월 경북본부 설립 업무협약(구미시-한식연)
- '16. 8월 ~ 21. 9월 부지 사용 문제로 사업 지연
- '21. 9월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토지 50년간 무상사용 가능)
- '22. 12월 국회의원-경북도-구미시-한국식품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 '23. 6월 총사업비 확정(206.3억원) 및 사업기간 2026년까지 연장

- '23. 9. 13. 경북본부 설립추진단 구미연락사무소 개소
- '23. 7월 경북본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3. 12월 공공건축심의 완료,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의뢰
- '24. 2월 경북본부 건립에 따른 영향평가 관련 법률검토 결과 회신
- '24. 8월 설계 착수
- '25. 9월 착공, '26. 12월 준공, '27. 1월 경북본부 업무개시

(3) 기대효과

- 경상북도 식품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기능 강화
- 세계적 수준의 식품 기술 확보 및 신제품 개발
- 인구 유입 및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 위치도



■ 조감도



관계법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이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

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생략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
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
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
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①~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
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
용허가를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
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소 관 부 서		회 계 과 (농식품산업과)
입 안 자	과 장	임 응 건 (김 선 현)
	팀 장	김 은 화 (주 석 진)
	담 당 자	전 규 진 (480-5073) (주 석 진) (480-5901)